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173
-----------	------

2020년 3월 3일  
교 육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문장길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 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장길 의원)

#### 1. 제안이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폐기 방식이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된 모범국가'로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재활용 업체와 전문가들에게 현실을 들어보면 "80%가 아니라 40% 정도의 실질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실정임.

- 이는 재활용 표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 없이 무분별 하게 분류되는 재활용 자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의 오류로, 재활용 표기 해석 및 분류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없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을 고려한다면 이는 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올바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임.
- 이에, 서울시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배출 방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교육감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협력을 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교육감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7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문장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73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배출 방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 용할 수 있는 것<sup>1)</sup>을 의미합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1996년부터 5년마다 전국 폐기물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발생현황, 도시규모별, 주거유형별, 기관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5차 조사(2016년~ 2017년)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은 제3차 조사(2006년~2007년)에 비해 6.18%, 제4차 조사(2011년~2012년)에 비해서는 4.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재활용가능자원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표-1]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연도별 비교<sup>2)</sup>

---

1)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됨.  
2) 환경부(2018).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최종보고서.

재활용가능자원 원단위 <sup>3)</sup> (g/일·인)	제5차 조사 (2016년~2017년)	제4차 조사 (2011년~2012년)	제3차 조사 (2006년~2007년)
	306.52	319.9	326.7

○ 또한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선별되지 못한 최종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제5차 조사의 폐기물 총 발생량(585,903톤)이 제4차 조사(287,831톤)에 비해 298,072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표-2] 폐기물 발생량 비교<sup>4)</sup>**

(단위 : 톤/년, %)

구분	폐기물 총 발생량	최종폐기물 처리량							
		계		소각량		매립량		기타	
		반출량	비율	반출량	비율	반출량	비율	반출량	비율
5차	585,903	585,903	100	327,566	55.9	116,797	19.9	141,540	24.2
4차	287,831	287,831	100	150,435	52.3	93,718	32.6	28,933	10.1

○ 이처럼 선별되지 못한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 계획(안 제4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사업의 위탁(안 제5조), 재정지원(안 제6조) 등을 규정하여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원단위는 인구1인당 가정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의미함(비가정부분에서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1인당 하루동안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의미함.).

4) 환경부(2018).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최종보고서.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 수립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교육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수립하여 초·중·고 단계별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시행 및 자유학기 등과 연계하여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국가차원의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 리담당관-2275, 2021.2.17.).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產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학생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감의 교육 사업에 협력한다.

제4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을 비롯한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